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회가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005-46

제출일자	2005. 8.
제 출 자	신주범의원 외 6인

ブ	子	[入]	ŀ유
 ,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)	

○ 「지방자치법」시행령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함(2005. 8. 5 공포)에 따라 본 조례 의 거창군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거창군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인상함(**안 제6조 제2항**)
 - 의정활동·회의수당 지급기준 중 제2항을 "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 일에 100,000원을 지급한다."로 함.
- 기타 제명 및 자구 등을 적합하게 정정함.

□ 개정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제2항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 제1항 (별표 6)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회가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바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"를 "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중 "지방자치법"을 "「지방자치법」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중 "의정활동"을 "의정활동비"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,000원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	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 (이 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	
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6조(의정활동·회기수당 지급기준)	
① (생략)	제6조(<u>의정활동비</u> ·회기수당 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<u>70,000원</u> 을 지급한다.	② <u>100,000원</u> 을